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교환차금 납부조항 신설(안 제21조의2, 안 제40조의2)
  - 일시납부 곤란 시 연 4퍼센트 이자로 10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
- 대부료 이자율 신설(안 제35조)
  -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시 연4퍼센트 이자로 분할납부 가능
  -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최초 준공된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2퍼센트 이자로 대부료 납부
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(제40조) 중 제8호 삭제
-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(연4퍼센트) 신설(안 제63조)
-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(연 4퍼센트) 신설(안 제63조의2)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2013.6.21.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,
  - 공유재산의 교환차금 정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의 신설과 함께 이자율을 낮추어 납부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,
  - 대부료 이자율을 신설하고, 벤처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연 2퍼센트 이자율을 정하였음.
  - 또한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였음.
- 공유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와 이자율, 대부료 이자율,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,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서 2%~6%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 상위법령이 2013년 6월 21일에 개정되어 지난해 12월 22일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개정

안을 지연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, 공유재산 교환차금 분할납부 등 관련 이자율 범위를 주민부담 완화차원에서 상위법령에서 4~6%에서 2~6%로 완화하였음에도 종전대로 4%로 유지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벤처기업, 외국인투자기업은 2%대로 인하

붙임 :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